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해성기공(문일섭, 문남준)
 ② 에스케이건설(주)(안재현, 임영문)
 ③ (주)태영건설(이재규)

나. 전화번호 : ① 041-568-0022 ② 02-3499-1623 ③ 02-2090-2453

2. 명칭 : 반원형의 받침판과 분할형 덮개판으로 구성된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PG클램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원형 받침판과, 서로 이격공간을 두고 반원형 받침판에 일측이 힌지 연결되고 타측이 볼트 연결되는 2개의 반원형 덮개판으로 구성되는 볼트조임식 클램프(PG 클램프)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상하현재에 브라켓 강관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브라켓강관과 웨브재의 중심축이 일치되도록 클램핑한 상태에서 반원형 덮개판 사이의 이격공간을 통해 이들의 연결부를 가용접합으로써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과 시공 공정을 간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하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반원형 받침판과, 서로 이격공간을 두고 반원형 받침판에 일측이 힌지 결합되고 타측이 볼트 결합되는 2개의 반원형 덮개판으로 구성되는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하여 상하현재에 브라켓 강관의 결합 및 브라켓 강관과 웨브재의 정렬과 가용접을 수행하는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보조 '20.10. 과징금·과태료 '20.12.)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